

2020학년도

##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0년 12월 10일(목) 14:0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3. 대학평의위원회(11명)

■참석의원 : 김진곤(의장), 천성오(부의장), 이건영, 박수원, 이경훈,  
신상진, 김태훈, 김건호, 신희연, 김민수 (10명)

■불참의원 : 고민석 (1명)

4. 안 건

가. 규정 개정(안)

- 1) 직원인사 규정 개정(안)
- 2) 직원승진 규정 개정(안)
- 3) 직제 규정 개정(안)
- 4)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- 5)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(안)
- 6)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- 7)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(안)
- 8)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(안)

나. 자문

- 1) 2020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(안)

5.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

【제8대 대학평의위원회 구성】

1) 의장 및 부의장 선출

- 성원(11명중 10명 참석)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다
- 제8대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기획부처장이 의원들에게 대학평의위원회 구성, 규정, 임기에 대해 설명하고 차례로 위원들을 소개하다.
-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'호선'을 통해 김진곤 교수를 제8대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으로 추대하고, 천성오 팀장을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장으로 추대하다.
- 의장 선출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다.

## 【규정 개정】

### 1) 직원인사 규정 개정(안)

-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직원처장은 4급 이상, 직원부처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함 (단체협약서 제23조 및 제24조)
  -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직급명(주사, 서기 등)을 삭제
- 의원이 단체협약의 직급 확대 이유를 묻고, 이에 대해 총무팀장이 취지 및 배경(단체 협약에 의거)에 대해 설명하다. 이에 의원 전원은 직급 확대의 취지에는 동의하다.
- 단, 개정안의 직종별 직위 및 직급표에 대해 보직명과 직급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도있게 검토한후 재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하다.
- 또한 개정안의 직제상으로 직원사회의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다. 직원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- 의원이 사무직과 기술직의 통합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그 배경과 이력의 설명을 요청하였으며, 이에 대해 다른 의원과 총무팀장이 이전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사안임을 설명하다.
- 의원이 직종 통합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 발령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, 직원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업무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- 의원이 상위 규정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정관이 개정되기 전 하위 규정인 직원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- 의원이 직원인사 규정의 직종별 직위 및 직급표는 직위와 직급이 혼재되어 이해하기가 힘들며,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- **의결내용 : 단체협약에 의거한 직급확대의 취지에는 모든 의원이 동의하다. 단, 개정안의 직종별 직위 및 직급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수정하여 재상정을 요청하며 부결하다.**

### 2) 직원승진 규정 개정(안)

-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직급명(주사, 서기 등)을 삭제하고 직급으로 일원화
- **의결내용 : 직원인사규정과 연동하여 재상정을 요청하며 부결하다.**

### 3) 직제 규정 개정(안)

- 총무팀장이 직급확대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
- 직원처장은 4급 이상, 직원부처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함 (단체협약서 제23조 및 제24조)
- 처장을 보하는 직급 조정에 따라 부속시설(부서)장 등에 대하여 동일 직급으로 변경

▪ 의원이 2017년 신설된 제4조 3(교육혁신원)의 교육혁신원장에 직원이 포함되는 이유를 묻고, 타 대학 교육혁신원장은 직원이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음을 사례로 설명하다. 교원이 할 수 있는 보직, 직원이 할 수 있는 보직, 교원과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는 보직이 명확히 규정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현 직제규정 제47조(보직)에 이미 교원과 직원이 보직 임명될 수 있는 보직이 구분되어 있고, 본 개정(안)은 2019학년도 임단협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(안)에 대한 검토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규정의 분리없이 보직이 추가되면서 규정화되어 현재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하위 사업단 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직제 규정의 보직을 정립하여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**의결내용**

- 제4조의 3(교육혁신원) 및 제47조(보직) 부분은 직제 규정상 직원과 교원의 보직의 정립의 선행후 재논의 하기로 하며 부결하다.

▪ 경력개발팀장이 취업전담교수 직제 신설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**주요 내용**

- 취업전담교수 직제 반영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의 직제 반영은 교수평의회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피력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제도는 책임시수 문제와 연동되어 교수사회의 결속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다.

▪ 의원이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배정에 불과할 경우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, 이에 대해 경력개발팀장은 학생 포트폴리오 및 취업통계시스템 선구축, 전문상담사 등과 연계 방안을 설명하다.

▪ 의원이 교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 학과장이 겸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다.

▪ 의원이 교수들이 취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다.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은 취업전담교수제도는 일정 정도의 방향성 제시로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규정이라는 것은 제도를 공식화 하는 것으로 특정 학과에서 먼저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제도 운영으로 취업 상담 창구가 일원화 되는 것이 어떠한지 학생대표에게 묻고, 이에 학생대표는 학과 규모가 큰 학과의 경우 현행처럼 지도교수 등의 활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제도의 운영보다는 전문인력의 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 1인에 의해 집중되는 것보다 모든 교수가 참여해야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 이에 경력개발팀장은 삼육대학교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취업전담교수제도 필요성의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제도의 운영은 교수에게 일로 인식되어 1년마다 교체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또한, 기존 채용한 전담교수를 활용하고 추가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제도는 직제 규정상 보직이 늘어나는 일이며 교원의 과다 보직의 현실을 설명하며 전면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.

▪ 의원이 특정학과의 사례를 바탕으로 취업전담교수제도보다 학생과 교수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취업전담교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임기를 1년이 아닌 2년으로 정할 것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해 임기의 문제가 아닌 전문성을 가질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#### ▪ 의결내용

- 각 학과의 규모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제13조의6(취업전담교수) “각 학과(부)에 취업전담교수를 두며, ”를 “각 학과(부)에 취업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”로 수정가결하다.

### 5)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
▪ 교육대학원 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#### ▪ 주요 내용

-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중 비학위과정 폐지

- 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

▪ 의원이 제53조(지원자격) 부분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“해당 학교급에서”의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다.

▪ 의원이 제58조(출석미달 및 성적불량 처리) 부분 개정의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추가 검토후 개정하기로 하다.

▪ 의원이 [별표4]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에서 영어교육과 조기영어교육의 자격취득요건에서 “취득”의 표시를 “이수”로 통일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▪ 의원이 [별표4]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에서 관련전공표의 체계적인 표현을 위해 관련 전공을 재배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#### ▪ 의결내용

-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표현인 제53조(지원자격)의 “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”를 “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”로 수정가결하다.

-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제58조(출석미달 및 성적불량 처리)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여, 추가 검토후 보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.

- 규정 표현의 통일성을 위해 [별표4]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의 영어교육 및 조기영어교육의 “취득”을 “이수”로 수정기결하다.

- 규정의 체계성을 위해 [별표4]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 부분의 관련전공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으로 수정기결하다.

#### 6)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기존 원안 품의 및 운영지침을 근거로 운영해 왔던 ‘주임강사’를 규정화
  - 한국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임강사의 수당지급 규정화
- 의원이 이번 개정(안)과는 별개로 현재 교수 신분에 따라 동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차등화 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하다.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7)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정(안)

-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중 ‘필수과목’ 관련 내용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8)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공학인증 필수이수교과목을 현행 산학협력캡스톤설계1에서 산학협력캡스톤설계1, 산학협력캡스톤설계2 중 택 1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9)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(안)

-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심의회 주관부서를 예산조정팀으로 이관
  - 심의회 사무관장을 기획처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【2020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(안)】

- 예산조정팀장이 2020학년도 제 2차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.
- 의원이 별지와 요약서의 인건비 내역(교원 보수)의 차이가 무언인지를 묻고

이에 예산조정팀장이 별도 확인후 설명하기로 답변하다.

- 의원이 교원보수 증가사유를 묻고 이에 예산조정팀장이 항목별로 설명을 진행하고 계정조정에 따른 실질적 변화가 없음을 부연 설명하다.

- 의원이 예산의 공개되는 부분의 제한으로 구성원이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다.

- 의원이 단기차입금과 적립금 현황에 대하여 묻고, 이에 예산조정팀장이 2020년 4월 결산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다.
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자문하다.

## 6. 기타 사항

### 【제8대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관련】

- 제8대 대학평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임기 개시이후 약 한달반 정도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였으며,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임기시작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### 【개방이사추천 관련】

- 의원이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지난 제7대 대학평의위원회가 적절하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. 교수 사회에서 개방이사 추천이 알려지지 않아서 적절한 후보 추천이었는지 의문이며,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다.

-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제7대 대학평의위원회 의원이었던 의장에게 과정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의장과 과거 평의원들이 과정을 설명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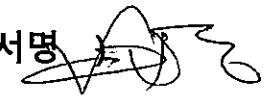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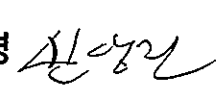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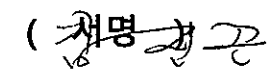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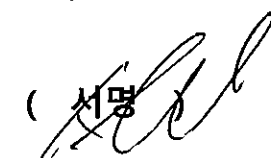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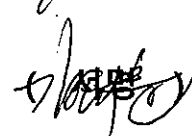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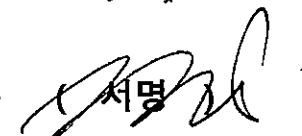
- 의장과 평의원들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의 개방이사추천 위원회 구성, 절차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다.

## 7. 폐회

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20년 12월 10일

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.

이 건 영 ( 서명  )  
박 수 원 ( 서명  )  
이 경 훈 ( 서명  )  
신 상 진 ( 서명  )  
김 진 곤 ( 서명  )  
천 성 오 ( 서명  )  
김 태 훈 ( 서명  )  
김 건 호 ( 서명  )  
신 희 연 ( 서명  )  
김 민 수 ( 서명  )  
고 민 석 ( 서명 )